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 심사보고서

2013. 5. 2.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년 4월 25일
- 나. 제출자 : 김화영 의원 외 5인
- 다. 회부일자 : 2013년 4월 25일 회부
- 라. 상정일자 : 제17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 4. 29)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김화영 의원 )

#### 가.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구청장이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갈등영향분석 등 갈등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당해 심의·자문에 대해 위원의 제척·기피제를 도입함(안 제9조)
-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매년 1회 이상 공공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19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이 조례안은 영등포구가 공공정책 입안 과정에서부터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이해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판명하여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갈등 조정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주요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갈등영향분석 등 갈등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9조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해관계 위원의 경우에

는 심의·자문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두고 갈등사안에 대한 합의결과 이행을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음.
- 본 조례안은 최근 우리 사회가 복잡다원화됨에 따라 주민의 참여욕구가 증대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구에서도 최근 뉴타운 개발, 재개발 사업, 노인요양시설 건립, 자동차 정비공장 신축, 공원 건설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간의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동 제정안은 구의 공공정책 수립과 추진에 따른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 방지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이라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법체제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김화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
----------	-----

발의년월일 : 2013년 4월 일

발 의 자 : 김화영의원 외 명

## 1.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이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6조)
- 나. 갈등영향분석 등 갈등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해관계

가 있는 당해 심의·자문에 대해 위원의 제척·기피제를 도입함

(안 제9조)

라.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

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매년 1회 이상 공공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함(안 제18조)

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19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

(2)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자치법규안 : 별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하는 데에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갈등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구의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



과장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⑥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 ⑨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2.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제6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5.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 중 해당 심의·자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갈등조정협의회)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선정한다.

-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당사자 및 전문가로 한다.
-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갈등 사안의 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활용
3.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16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과 협의회의 위원 및 제15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공공갈등심의 또는 공공갈등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평가) 구청장은 년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19조(수당지급 등)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또는 제12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5조의 전문가,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